

2019년도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3. 27.(수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대 상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
 - 심의위원 : 박성호, 임진모, 전용준(분과위원장)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안건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회의안건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3건(안건번호 제2019-4559~4618호)
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 중에는 2019년 1월말, 2월초 경부터 방영 중에 있거나(예컨대, tvN의 '진심이 닿다', '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' 등) 3월초나 중순경에 막 종영한(예컨대, tvN의 '로맨스는 별책부록' '커피프렌즈' 등) 최근의 인기 방송저작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권리자들의 경제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
- B 위원 : 4559-4618건은 명백한 불법 복제 전송으로 시정권고 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함. 게다가 현재 방송중이거나 막 종료된 최신 저작물로 여지가 없어 보임
- C 위원 : 본 심의대상은 방송저작물의 복제본(데드카피)로서 공정이용 등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, 삭제 권고 등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.

2019년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4. 3.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

분과위원장 전용준